
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수상레저사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하여 휴업신고 면제 기간을 “30일 미만”으로 하고, 재개업 신고대상을 휴업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30일 이상 휴업한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